

구 分		정 수 기 준	금 액(원)	비 고
단 체	일 반	19세이상 64세이하	4,000	
	청소년 · 군경	청소년: 14세이상 18세이하 군경: 하사관이하 군인 및 의경, 전투경찰	3,100	
	노인	65세이상	2,000	
	어린이	4세이상 13세이하	1,800	
제주도민은 개인요금의 50% 할인(증명 확인 후)				

※ 단체: 30인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
※ 관광진흥부가금은 공급가액의 2%임

2. 이용료

구 분	정 수 기 준	금액(원)
유람동차	어른, 청소년 14세이상	1,000
	어린이 4세 이상 13세 이하	500

30. 서울特別市低所得住民의生活安定支援에關한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
(14時 42分)

○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市低所得住民의生活安定支援에關한條例案을 상정합니다.
(議事棒 3打)

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.

.....

(參 照)

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안
심사보고서

1998. 4. 9
보건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
1998년 4월 1일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
1998년 4월 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제10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
보건사회위원회(1998.4.7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

2. 제안설명요지(보건사회국장 朴漢慶)

지금까지 예산반영에 의하여 시행해온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가. 보호대상자(안 제2조)

(1)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한 자
(2) 기타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

나. 보호내용(안 제3조)

(1) 결식아동 급식비, 교육관련경비, 명절 보상품, 월동대책비, 긴급구호비 지원
(2) 기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다. 보호대상자의 결정(안 제4조)

(1) 생활보호법 규정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·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하여 통보한 자로 결정
(2) 긴급구호비의 경우는 본인 또는 그 친족,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
(3) 신청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함.

4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다. 합의: 필요 없음.

5. 검토의견(전문위원 尹炳國)

○ 본 제정조례(안)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호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.

○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저

<p>소득 국민을 위한 대표적인 공적부조프로그램은 생활보호사업을 들 수 있고,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로서 “생활보호법”이 1961년 제정되어 그 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와 같은 생활보호사업의 특성은 중앙 집권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통제에 바탕을 두고 있어, 대상시민의 특수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사업의 내용이나 수준 그리고 지역별,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. <p>이러한 문제점은 지방화시대의 진전에 따른 저소득주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확대 현상을 감안할 때 계속 증폭될 소지가 있고, 특히 서울의 경우는 타 시도와 비교 더욱 그러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생활보호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사업 범위 외의 몇 가지 사업을 80년대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. <p>즉, 이번 제정조례(안)에서 정하고 있는 명절보상품 및 월동비지원(80년), 결식아동급식비지원(89년), 긴급구호비지원(89년), 교육관련경비지원(97년) 사업이 그것들임.(괄호안은 처음 시행년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그러나 이러한 보호사업은 “생활보호법” 내지 중앙정부의 지침에 근거한 사업이 기보다는 시 자체 방침에 의한 독자적인 사업들로서 그 시행 근거가 모호하고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었음. 따라서 본 조례(안)은 새로운 사항을 규율한다고 보다 그 동안 추진해 오던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체계화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조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임. ○ 내용검토에 앞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,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	<p>개인에게 기부, 보조 또는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상위법인 생활보호법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, 개인에 대해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(안)이 지방자치법, 지방재정법 및 생활보호법에 위반되는가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.</p> <p>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에 “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”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, 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금품의 보조도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1호 규정의 “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”라고 해석하여 보조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.</p> <p>또 생활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효과가 조례에 의해 전혀 지장이 없는 때나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, 각 자치단체가 그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때에는, 그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여 이러한 유형의 조례제정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따라서 그 동안 시행해 오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사업에 대해 그 법률적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된 본 조례(안)은 당연한 조치로 판단됨. ○ 다만, 저소득주민에 대해 보호사업의 주요핵심 내용은 보호대상의 범위설정과 보호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바, 본 조례(안) 제2조에 보호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와 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있고, 또 조례(안) 제3조의 보호내용도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등 5가지 외에 기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,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보호대상자와 보호내용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. <p>그러나 이러한 보호사업이 특정한 개인에게 예산으로 금품을 직접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고도의 객관성 및 형평성</p>
--	--

<p>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, 또 보호대상과 보호내용의 확대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, 조례(안) 제2조(보호대상)와 제3조(보호내용) 중 기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</p> <p>아울러 보호내용의 지급시기, 긴급구호비가 지급되는 저소득 시민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도 조례로 정하여 임의적 집행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</p> <p>○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는 법령의 근거가 미약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보호사업에 대한 그 법률적 근거를 확보코자 제정되는 것인 만큼, 본 조례(안) 제정전에 시행된 보호사업에 대한 추인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</p> <p>6. 질의답변요지 : 생략</p> <p>7. 심사결과</p> <p>원안의결(재적 15인, 재석 9인, 찬성 9인)</p> <p>8. 소수의견요지 : 없음.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</p> <p>.....</p> <p>○議長 文一權 그러면 서울特別市低所得住民의 生活安定支援에關한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.</p> <p>議員 여러분, 이의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.」하는 議員 있음)</p> <p>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보호대상자)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</p>	<p>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한 자</p> <p>2. 기타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</p> <p>제3조(보호 내용)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. 교육관련 경비 지원 3. 명절보상품 지원 4. 월동대책비 지원 5. 긴급구호비 지원 <p>6.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4조(보호대상자의 결정) ①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선정한 자로 결정한다.</p> <p>②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.</p> <p>③제3조제1항제4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.</p> <p>④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,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.</p> <p>⑤기타 보호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>31. 서울特別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특별市長 提出)</p> <p>○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特別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水資源管理委員會 朴正龜議員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朴正龜議員 水資源管理委員會 所屬 朴正龜議</p>
---	---